

사법감시

창간호

1995년 10월 2일

발행인 : 김중배 편집인 : 박은정 편집위원 : 박경자, 박원순, 안경환, 차병직, 한인섭, 홍성우 제자 : 신영복

「사법감시」를 내면서

근대 사법 100년을 맞는 올해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사법감시를 정례화 시킬 매체들이 탄생된다는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법개혁 과제가 유례 없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1995년을 한마디로 사법의 주체가 법조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라는 인식을 돌이킬 수 없이 확고히 해준 해로 기억될 것이다.

대법원이 사법 100년을 기리기 위한 이런 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과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가진 적이 있었던가? 사법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국민 주권의 원칙이 사법에서 관철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기념하기보다는 반성과 함께 맞아야 할 사법 100주년임을 자각한 시민적 역량과, 송두리째 뒤엎지 않고서도 바꿀 수 있다는 제도적 대안에 의 상상력, 바로 시민적 상상력을 자양(滋養)으로 삼아 이제 「사법감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사법실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특히 주력할 것이다.
사법감시의 출범은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확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껏 사법은 권력에 의한 감시를 받아 왔는지는 모르나 시민에 의한 감시와는 무관한 지대에서 살아왔다. 현재의 사법제도가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국민적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일반 시민들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범종사자가 연었던 이익만큼 국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원과 검찰의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 구조, 높은 문턱과 불친절, 사법 서비스를 얻는데 따르는 엄청난 비용이 국민 법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이 덜된 부분에 속한다. 만약 광복 50년에 이르는 그 기간에 사회의 다른 부분들에서 기본들과 그 종사자의 의식이 변해 간만

큼, 사법도 그때 그때 조금씩 자기 모습을 바꾸었다면, 올해 초와 같은 가히 '혁명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법감시」의 출범은 이제 국민이 더이상 법생활의 피해자로서 당하지만 않고,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확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어 마땅할 줄 안다.

「사법감시」는 앞으로 활동하면서 사법 실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특히 주력할 것이다. 사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은 사법에 흠집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사법을 사랑하는 자세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감시 활동을 통해 설사 법조 안팎의 특정 인사가 거명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에 대한 편견이

나 예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충정과 함께 구체적 사안에서의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사법정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는 얼마나 가공스러운 사회가 될 것인가. 법종사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법률가들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일 수 밖에 없다면, 이제 남은 일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사법감시의 힘을 키워 나가는 일이다. 그 길 이 이 땅에 법치주의의 풍요를 정착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한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법치국가는 매 끼니의 밥이나 마실 물, 숨쉬는 공기와도 같으며, 민주주의가 지닌 최대의 장점은 바로 민주주의만이 법치국가를 보장하기에 가장 알맞다는 점인 것이다.”

박 은 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목 차

창간사/2

· 「사법감시」를 내면서

사법감시 초점/3

· 목불인견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사법감시 25시/4

· 5.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 제2, 3 회 열린법정 개최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출범준비

사법감시 통신문/8

·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 전 노동부장관 총리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참여연대 대안/10

· 특별검사제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모니터 리포트/13

· 사법을 모니터한다.

판결읽기/16

·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

시민발언대/18

· 화생양만은 안된다

이것만은 고치자/20

· 법관의 편의주의와 권위주의

사법감시센터 활동일지/21

「사법감시」에 바란다/22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여성단체연합 · 환경운동연합



目不忍見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개월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다. 5.18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이 얼마나 문제인지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어려운 법률적 은어와 암호를 사용하여 흑세무민하려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의 절정이 “공소권 없음”으로 표현된 것이다. 실로 없어진 것은 공소권이 아니라 검찰의 위신과 명예이다. 조용하던 국민 여론을 들끓게 만든 것이 검찰의 유일한 공적이라면 공적이겠다.

문민정권 초기에 마치 검찰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활약하였고, 홍준표 검사와 같은 스타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사정이 표적사정이었음이 함송회 검사의 증언만으로도 너무나 분명해졌다. 동화은행 관련 사건 범죄혐의자들, 상무대 사건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권 포기의 모습은 ‘정의의 사도’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것이 우리가 알아 온 검찰의 본 모습과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목불인견의 모습은 권력의 주구로서의 검찰상이 아직도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법이론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못할 일도 현집권층과 대통령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잘 이해된다. 검찰총장에 김기수 씨가 임명된 것도 그렇다. 김기수 씨는 다른 고위 검찰 간부보다 더 유능할 수도 무능할 수도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교 동창생이란 이유로 인해 발탁되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권 후반기에 가장 믿을 만한 부하는 맹목적으로 충성할 측근 밖에 없다는 YS식 사고의 산물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에 경찰간부, 검찰간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한다. 국민이 보기엔 이상하지만, 그들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므로 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사정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사정을 책임진 검찰의 총수가 맹목적인 정권보위의 앞잡이라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수사결과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든다. 김도연 검찰총장은 몰려나자 말자 민자당 지역구를 전리품으로 하사 받았다. 검찰총장을 할 때에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가히 불문가지이다. 후임으로 임명된 PK 출신 검찰총장 역시 전례에 비추어 어떻게 행동할 것인

지도 자명해 보인다.

현재 PK는 경찰, 검찰, 국세청의 사령탑을 맡게 되어 있다. PK가 아니면 명함도 내밀지 말라는 식이다. 6공 하에서 TK인맥이 검찰요직을 독식할 때는 여론의 거센 비판이라도 받았다. 그런데 자칭 문민정부 하에 서는 그보다 더한 자리의 독식도 개의치 않고 만들어 간다. 아무런 원칙이 없이 권력강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심인 대통령. 거기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법원칙을 세울 줄도 모르는 검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의종을 읽고 따르기에 바쁜 검찰에 어떤 종류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검사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의 소장검사들에게만 묻고 싶다. 현재와 같은 검찰행태에 염증을 내는 국민들을 보면서 그대들은 왜 검사직을 선택했는가. 만일 상층부에서 “공소권 없음”과 같은 결정을 주문한다면, 그대들도 그러한 요청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 것인가. 그대들도 이런 행태들을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

[한인섭 서울대 공법학과 교수]

5 · 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12·12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린 검찰이 5.18 쿠데타와 광주학살에 또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실망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결정을 내린 검찰은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7월 24일 (월) 오후 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5.18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박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과 학생, 교수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으신 서장대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법철학회 부회장인 오병선 교수는 '5.18 불기소조치의 법리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라는 주제로 오늘날 국가가 해야 할 일, 특히 사법기관의 임무는 헌법규범가치의 일부분인 현상질서의 유지를 통한 안정만이 아니라 헌법규범가치의 전체가 요구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공공복리 내지 공동선의 실현이며 이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오 교수는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

처분에서 나타난 법철학적인 문제점을 네 가지 물음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불기소 이유의 근거가 되는 켈젠이나 라트부르흐의 법철학이론들이 과연 검찰이 원용하는 대로 실효성이나 법적안정성만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로는 검찰의 결정문에 나타난 법실증주의에 관한 것인데 오늘날의 대표적인 법효력이론은 범승인설이라는 것이다. 즉 사실적 세력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실효적이 될 때, 그러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국민들이 그러한 사실관계에 신뢰를 보내며 그러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승인하였을 경우에 법의 효력을 갖는 규범질서가 창설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셋째, 쿠데타에 의한 새로운 정권 및 헌법질서 창출이 쿠데타 과정의 제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법리에 반하는 이론으로 이것은 헌법자체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헌법과 신헌법이 동일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원리로 한다면 헌법질서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이다. 넷째,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후 추후에 국민투표, 또는 대통령 선거 등 국민적 심판과정을 거쳤다면 그 이후에 다시 쿠데타를 통한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를 사법심사하여 단죄하려 함은 과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부당한 것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오 교수는 '성공한 쿠데타'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국민의 희생 사실까지 면제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법질서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선량한 법의식에 배치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것이 서울대 공법학과 한인섭 교수에 의해 지적되었다. 한 교수는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한마디로 "성공한 내란범에 대하여 누가 처벌할 힘이 있겠는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힘은 없어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범죄이며, 그럴 때 법률가들은 성립된 범죄를 범죄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말하자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형사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확고한 명령이므로 이러한 헌법규정을 볼 때에도 성공한 내란범에 대하여는 더더

제2회 열린법정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



욱 형사처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과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고, 헌법상의 법앞의 평등원칙 위배하였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범죄자를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게 하여, 범인을 놓아줌으로써 검찰 스스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 및 범인 은닉, 도피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사법부는 5공정권 성립에 전후하여 정치인들과 민주시민에 대한 정치군부의 숙청작업에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데 대하여 일대반성과 부끄러운 과거청산작업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절대적으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근거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이 토론회에서 거듭 밝혀졌듯이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비추어 5.18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사법은 국민에게 법치에 대한 더이상의 혼란을 안겨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겪은 사건을 통해 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인 「열린법정」을 개최해 왔다. 검찰과 법원에서 대표적인 오판으로 꼽고 있는 김기웅 순경 사건을 집중조명해 보는 것으로 시작된 「열린법정」은 사법작용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각각의 사건을 통해 되짚어 보는 시민토론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박경자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회 열린법정에서는 허위로 조작된 고소사건에 휘말려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경자씨를 모시고 사건의 발생과 진행과정, 이후 무죄를 인정받고 나서도 문제의 담당검사에 대한 문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박경자씨는 보석에 의해 석방될 때까지 3개월, 안왕희씨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고, 그 후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92형6080 선고, 이준범 판사)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박경자씨는, 부인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어 고소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합의를 종용한 남편과 별거를, 어머니의 진실을 믿고 검찰과 법원을 동분서주하던 아들의 자살이라는 크나큰 시련을 맞보았고, 안왕희 씨 역시 노모가 아들의 구속사실을 듣고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 당시 검사(수사검사 박장수)가 조금만 신경을 써 조사를 치밀하게 하였더라면 이 사건이 고소인의 무고였음이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후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작성한 ‘무죄사건등평정서’에서도 “고소인 및

고소인측 참고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의 상호모순점이나 불일치하는 점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할 때에 그 이유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후 이들이 제기한 무고 고소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내린 무죄이유 등을 모

두 무시하고, 고소인이었던 한성숙의 고소내용에 허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처리 되었다. 이는 검찰이 다른 검사가 한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의 조직이 기주의를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경자씨, 안왕희씨를 비롯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많은 시민들이 그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겪은 고통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이제라도 관련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엄한 문책, 처벌을 통해 답변해야 할 것이다. ❷

제3회 열린법정

내부고발자, 해인원 정광용씨 절도죄 사건

6월 29일 세번째로 진행된 열린법정에서는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해인원 정광용씨 절도죄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고발의 문제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 해인원(현 동산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수용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70%이상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인원의 최장수, 김혜경 부부는 보호자들로부터 친권 포기각서를 받은 후 그 정신지체아들을 무연고자로 신고하였고, 또한 해인원에 입원시킬 때 수백만원에서

2천만원 까지의 돈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정광용 씨는 1994년 1월 해인원에 보육사로 입사하였는데, 친권포기각서와 예금통장 등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는 서류를 1994년 3월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어 “함께걸음”이라는 월간지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인 해인원은 개인간에 매매될 수 없음에도 최장수, 김혜경 부부는 서정희 이사장에게 수익원을 주고 매매하였고,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되자 정광용씨 등 4명의 보육사가 1994년 10월 노조를 결성하였다. 서정희 이사장은 노조의 결성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노조위원장인 정광용씨를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은 서류를 사무실 서류함에서 훔친 것으로 조작하여 고소하였다. 정광용씨는 이 고소사건으로 1994년 12월 9일 광주군청 부군수와 면담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1995년 5월 23일 선고유예 판결(남부지원 형사1단독 판사 정용상)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정희 이사장 당시 원장이었던 김순희 씨가 정광용씨를 고소한 것은 무고였다는 양심선언을 하는 등 정광용씨를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까지 공소를 유지해 결국 선고유예라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정광용씨 절도죄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 이지문 서울시의원, 이문옥 전 감사관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내부고발의 어려움과 중요성,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이 함께 이야기되었다.

정광용씨와 같이 박해받는 내부고발자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연대 내부고발자지원센터에서 국회에 입법청원했던 ‘내부비리고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 부정부패의 척결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광용씨 사건은 지난 7월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것은 방송매체를 통해 내부비리고발자의 보호필요성이 처음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할 것이다. ❸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특히 우리의 경찰, 검찰, 법원이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 의식과 행태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권리침해 현상은 부지기수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실태과정에서 시민들은 강대한 권력기관으로서의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검사의 인권유린을 고발해 보아야 그 결과는 뻔한 것이며 경찰과 법원의 잘못도 서로 감싸기로 일관하여 효율적인 구제를 보장받기 어렵다.

이러한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에 관하여 진정을 접수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정부합동민원실 등의 일반행정기관과 다른 여러 기관이 있으나 이들 역시 '초록이 동색'인 측면이 적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옹호기관으로서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스스로 연합하여 조직하여 자구적인 국민적 조직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6월 29일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아 박경자씨를 준비위원장으로, 이택승, 전재덕, 이재순, 권정자, 김경란 씨 등을 준비위원으로 10월 말 정식 발족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 회원의 자격은 사법을 제자리에 놓고자 하는 뜻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사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 또는 이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뜻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 모임에서는 앞으로 사법피해 사례 접수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사법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 및 실천행동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련기관에 대한 항의공문발송, 항의방문,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공적추방요구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정 모니터링 함으로써 법정에서 실질적인 '사법감시'를 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은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감시할 것이다 ·

- 수사과정에서의 위압적인 언행이나 폭력행사 등의 인권침해
-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 체포하는 행위
-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해 주고 돈을 받는 브로커 행위
-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뺄 때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
- 뇌물을 주거나 수수하는 경우
- 사건을 미루기 위해 여기저기 pingpong치 하는 행위
- 수사소환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장시간 대기시키는 행위
- 재판장으로서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보이는 고압적인 폭언 행위
- 턱없이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운영 및 실무지원,
「사법감시」 발간을 위한 편집 및 기자 활동,
기타 사법감시센터의 활동에 도움 주실 분을 찾습니다.

회원모집안내

“사법, 이대로는 안된다”고 느끼십니까?
“사법을 제자리에 놓아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월회비 : 1만원, 연회비 : 10만원

후원금 : 1구좌 5만원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에게는 「사법감시」가 무료 배포됩니다.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LG그룹 해고자를 법정구속(8월25일)한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한주 판사에게 발송한 서한을 실는다.

수신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4단독

판사 이한주 귀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연초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사법 개혁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근대사법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사법부가 이제 권위주의적 사법관행을 탈피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사법부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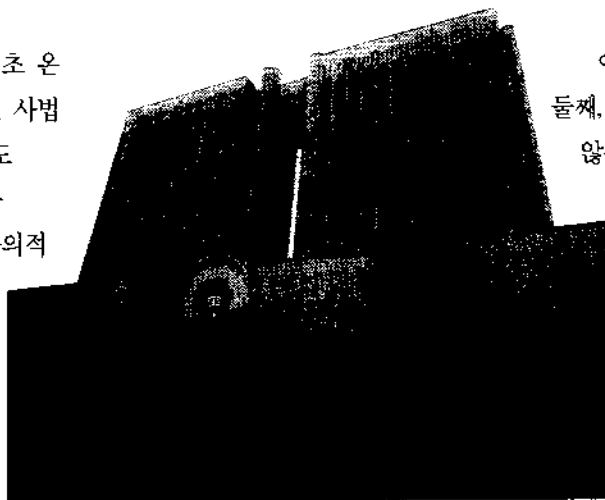
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고들 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사회현실에서 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공정한 규칙과 양식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LG그룹 해고자들에 대해 지난 8월 25일 귀 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진 법정구속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 29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귀 재판부는 이번 법정구속 조치가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재판태도가 불성실하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재판부가 법정구속조치의 근거로 삼은 위의 사안에 대하여

첫째, 수많은 불구속사건 심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조치하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타당한가, 둘째,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이 가볍지 않은 중대한 것이었다면 어찌하여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 통상회부차 않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가, 셋째, 약식 명령에 불복해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런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귀 재판부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가, 넷째, 불출석한 동료들을 위해 불출석 사유를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이러한 피고인에게 법원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점에서 깊은 의문을 갖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번 법정구속조치가 단지 판사 개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인 피고인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권위는 법원 그 자체의 신성함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의 어느 조문에도 이 사건의 피고인들을 구속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피의 사실과 관련된 유무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된 피고인들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국민이라

는 점에서 귀 재판부의 이번 조치는, 설혹 피고인들의 사소한 잘못이 있었다할 지라도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현재 구속중인 피의자를 조속히 석방하여 재판에 임하게 하는 것이 인권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며 귀 재판부의 용단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5년 9월 4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윤관 대법원장에게 서한을 발송했고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감사관에서 9월 12일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도 특정사건에 대하여 담임법관에게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 내용을 관련된 재판에 참고토록 재판이 계속 중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 송부하였다고 한다.

전 노동부장관 중죄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이형구 전 노동부장관에게 중죄한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약식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지난 9월 12일 대검찰청에 발송한 서한을 실는다.

수신 : 대검찰청 중수2과장 김성호 귀하

전 노동부장관 이형구 씨가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할 당시 관련 기업체로부터 수익원의 뇌물을 수취하고 대출한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만 해도 현직 각료를 구속한 검찰의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직 각료가 아니라 총리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위에 있는 존재일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 검찰의 역사에서 현직 각료를 구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같은 모습이 그래도 새로이 태어나려는 검찰의 작은 용기로 해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형구 씨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10여개 기업체

들의 대표들을 모두 가벼운 구약식에 처하고 말았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검찰에 다시 한번 배신감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중죄액은 1천여만원에서 수천만원대에 이르고 있어 그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액수라면 구속도 되는 일반적인 중죄사건에 비추어 보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많은 대기업의 대표들을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정책과 결정을 훼손한다는 것이 나쁜 일이지만 동시에 뇌물을 줌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 주고 공무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수뢰자 보다 중죄자가 뇌물범죄를 코드기고 사주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브를 꼬인 사악한 뱀의 모습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중죄자의 엄단 없이는 결코 우리 사회에서 뇌물의 관행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대규모 뇌물사건에서 중죄자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았던 검찰의 관행이 바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은 우리가 목격한 바입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그동안 ‘인천 오림포스 호텔 카지노 비리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은 검찰, 경찰, 세무 공무원들도 빠짐없이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하는 등 그동안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기관의 행태를 주시하면서 엄정하고 균형있는 법집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죄자를 그대로 구약식하고 만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많은 기업체들이 마음대로 뇌물을 주고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을 조장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구약식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죄자에게 형평의 원리에 맞는 법집행을 통해 이들에게 엄벌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오해를 씻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1995년 6월 12일

위의 사안에 대하여 같은 날 담당재판부(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이윤식 판사)에도 통상회부할 것을 건의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 후 법원은 6월 19일 이형구 전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22개 기업체 임원 중 12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검찰은 지난 7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소고발인들에게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려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7월 25일 참여연대와 5.18 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은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아래에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취지와 주요골자를 싣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제안취지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구이다. 공익의 입장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 유지하며 나아가 형벌의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나라와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의 노릇을 한다. 검찰권의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행사 없이는 한나라의 사법적 정의가 파탄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파탄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언제나 정치권력의 주변을 헤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자신이 옳게 지켜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자율성을 잃어 왔다. 수많은 대형부정과 부패사건, 권력의 남용과 비리사건에서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 내고 그 진실에 따라 처리한 적이 있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함승희 변호사의 폭로는 바로 우리 검찰이 다다르고 있는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따지고 보면 원래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어서 정치권력이 검찰은 자신의 수중에 두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바로 이러한 검찰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

도적 방안이나 정상적인 조직 외에 특별검사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왔다. 여러 나라에서 아예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선거하거나 검찰권의 행사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참심제(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및 사회주의 국가) 또는 배심제(영국, 미국)를 도입하거나 검찰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검찰심사회제도(일본) 등을 발전시켜 왔다. 통상의 검찰이 담당하여 공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따로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하는 나라(미국)도 있다.

이번 5.18 광주문제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 땅의 헌정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포기한 것은 검찰 스스로 추상같아야 할 검찰권을 내던진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검찰권의 행사를 완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버린 지금의 검찰 손 안에 남겨 둘 수가 없다.

더구나 과거 이른바 ‘5공청산’과 관련하여 1988년 제 144회 국회 당시 이미 야당에서 당시 6공화국의 미진한 수사 의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에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조승형 의원 외 70인 발의)을 제출하여 심의한 바 있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고문등 인권침해사건과 권력형 부정비리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검찰권을 발동하여 5공청산에 과감히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정부의 5공청산작업이 한계성을 노정하게 되었으므로 국회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의 한계성과 검찰의 무력성을 극복하여 조속히 5공청산작업을 마치고 민주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특별검사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 동안 수차례 재야법조계 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진행되어 온 특별검사제 논의를 입법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와 5.18 광주민중항쟁연합에서는 ‘特別檢事の任命等에 관한 法律’案을 기초하고 국회에 그 입법을 청원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여야를 떠나 박차를 가하여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땅에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랄 뿐이다.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별검사와 그 보조자의 임명, 직무범위, 신분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직무) 특별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해당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확보

제2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본법 적용의 대상) ① 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에 관련하여 임명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2.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른 행정 각 부의 장관 및 차관
3.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처와 청의 청장, 감사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4.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5. 법관, 검사
6.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위원회의 주요간부
7. 전 1호 내지 6호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② 전①항 1호의 경우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재직기간 동안 대통령은 소추당하지는 아니하나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③ 전①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당해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특별검사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특별검사 임명하는 경우) ① 특별검사는 제3조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명된다.

1. 국회가 스스로 통상의 검찰에 의하여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
2. 재판 중 발견한 중대한 범죄를 당해 재판부가 관할 법원장을 통해 검찰총장에 수사를 촉구하여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국회에 통보해 온 때
3. 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의 국민 5만명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특별검사 임명을 원서로써 국회에 청구해 온 때

② 전항의 1호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발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2호에서 법원장은 당해 재판부의 수사촉구 건의를 묵살할 수 없으며, 검찰총장이 수사촉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수사착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에 수사촉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3호에서 다수의 청구인 가운데 5인 이내의 연락 받을 대표자를 지명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검사 임명의 거부) ① 제4조의 제①항의 각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항이 제3조에 의하여 본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범죄가 아님이 명백한 때
2.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항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거나 범죄의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
3. 특별검사의 임명 요청이 그 대상에 관한 범죄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임에 비하여 오로지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인 것이 명백한 때
- ② 전항의 거부는 제8조 ⑥항의 결의정족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거부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특별검사의 임명자격) 특별검사는 10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7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회의원이었거나 정당원이었던 자
5. 당해 사건 또는 관련사건에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관여하였던 자

제8조(특별검사의 임명절차) ① 국회는 위 제4조 제①항의 각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검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출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를 5인 이내에서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5인 가운데서 1명을 선출 하며 이 경우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한다.

⑤ 특별검사의 선출은 국회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로 한다

⑥ 전⑤항의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의 결의로 한다.

제3장 특별검사의 권한과 임무

제9조(특별검사의 책임) 특별검사는 국회의 법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수사와 처분의 경과에 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누구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한 해임등을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특별검사에 대한 감독) ①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특별검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감독은 국회 법사위원회가 행한다.

③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②항에 따른 감독을 할 때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제11조(특별검사의 직무제한과 확장) ①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검사의 성명

2.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의 개요

3.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의 대상

②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회가 당초 담당하도록 결의한 내용과 다른 범죄가 드러나거나 또는 수사·기소의 대상을 추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전 ②항의 동의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제12조(사무실) 특별검사가 직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은 서울지방검찰청에 둔다.

제13조(보조자 파견요청등)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자를 요청해 올 경우 그 요구에 따라 그 소속의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파견 기간 동안 특별검사가 직무상 발한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이 특별검사가 직무상 발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그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는 범죄에 관하여 보조하는 자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① 특별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는 다른 국가기관에 사실조회, 문서송부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국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검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있는 경우 그 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절차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수사) 제2장(공소)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의 권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목적과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의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특별검사의 신분보장

제17조(공무원신분) ① 특별검사는 국회의 선출 결의후 국회의장 앞에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선서한 때로부터 국회의 해임 결의가 있

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령에 의하여 공무로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제18조(해임) 특별검사가 헌법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신분보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해임결의가 있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20조(보수등) ① 특별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 및 그 보조자의 출장에 관한 여비, 숙박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법 칙

제21조(특별검사의 수사방해죄등) ①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가 무단히 사건 수사내용을 공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위법한 특별검사임명청구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4조 제1항 2호에서 법원장이 당해 재판부가 요청해 온 수사촉구를 검찰총장에게 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특별검사임명을 국회에 요청하지 않은 때

② 제4조 제1항 3호에서 일정한 범죄의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서명을 위조한 때

제6장 공소시효등

제23조(공소시효완성되지 않은 사건) 이 법의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공소시효의 정지등) ① 본법 제3조의 자가 그 재직 이전 또는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관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은 형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본법 제3조에 규정한 직위를 순차로 역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본법의 적용대상인 자가 본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청구가 있거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조사 중인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 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동안 형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25조(본법의 효력발생시기) 본법은 공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법을 모니터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대학생 모니터팀은 1995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남부지원에서 모니터 활동을 수행하였다. 참가자는 서울대 4인(김예영, 김희수, 나희선, 박진석), 연세대 2인(백재승, 이현), 이화여대 5인(이선민, 장민아, 박은영, 김리희, 김재련)이었다. 방청 시간은 주로 오후였으며, 6월 26일 오후 5시~8시에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방청결과를 토의하여, 그 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시작 단계에 있는 모니터 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형사법정의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려 했다. 전반적으로 형사사법 운영 실태는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형사소송절차가 잘 고지되고, 노골적인 위압적 언사도 많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사법관행들이 그다지 주목받지 않은 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방청인의 입장에서 느낀 불편

모든 사람은 시민의 자격으로 재판정을 자유로이 방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듯하다. 법정과 법원 역시 방청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는 듯하다.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1) 법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비단 처음 가는 방청인 뿐 아니라, 도중에 만난 어느 변호사가 ‘오랜만에 이 법원에 오니, 법정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다. 상주자에게는 편리한 시설이 일반 시민에게는 대단히 큰 불편을 줄 수 있음을 알고, 법원을 짓고 법정을 배치할 때 한번쯤은 방청인, 시민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태도가 아쉽기만 하다. 국민을 위한 사법은

소소한 데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2)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남부지원의 경우 주위가 다소 산만하고, 시설도 썩 좋지 않아 더욱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지원일수록 여러 여건이 부실한 점을 유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가야 할 것이다.

(3) 남부지원의 경우 대기할 만한 장소가 없었다. 겨우 길다란 나무의자 2개 정도여서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4) 6월 23일 남부지원의 경우 공판일정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다. 6월 23일 오후에 갔는데, 22일 일정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 존중하는 권위적 사법관행

법관은 위압적 · 권위적 태도를 가지고 신문하거나 소송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형사소송규칙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요소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어 유감이다. 그리고 법정의 구조 자체에서도 위압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재판장의 언사 · 태도

노골적인 위압적 언사는 이번 모니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몇 재판장이 피고인 혹은 증인에 대하여 폄하하는 인상을 주는 언사가 있었다.

6월 2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합의21부, 재판장 徐載憲)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시위에서 화염병을 던져 전경 2명이 다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그 시위는 장애인 노점상의 자살에 자극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다리를 약간 저는 등의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분노가 더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재판장은 “그 사람 병신 됐으면 어떡할거야”, “방화를 즐긴 것 아닙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복수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등 피고인의 처지에 비추어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 같은 법정에서 강모씨의 절도피고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자 “딴 거 외우고 다니느라고 잊어버렸냐”, “직업은 없죠”(직업은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부정적 선입관이 배인 말투로 질문하자, 피고인은 직업은 노동이라고 답변) 등 피고인을 폄하하는 언사를 구사했다.

재판장이 반말을 부지불식간에 구사하는 장면이 여럿 눈에 띄었다. 증인의 직업을 묻는 과정에서 “놀아?”, “직업 없어?” 하고 묻는 장면들. 증인은 공판정에서 대단히 긴장해 있는데, 거기다 폄하적 언사로서 증인을 더욱 위축시키는 일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또 증인을 호칭함에 있어 “증인”이라 했다가 “아줌마”라 했다가 하는 등 왔다갔다 하는 사례가 목격되었다.

(2) 수 갑

피고인들이 모두 수갑을 찬 채 방청석 앞줄에 나와 있다가 피고인석에 올라갈 때만 수갑을 풀어 주는 것을 보았다. 그때도 한 손에는 수갑이 걸려 있었다. 최소한 법정 안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수갑을 풀어 주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판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잔존하는 관행들

법원이 입장할 때 “기립”, “착석”과 같은 구호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지금 재판부가 입장합니다”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방청인에 대해 주의를 준다든지, “기립” 구호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정리가 주의를 주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방청인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긴장시킬 수 있다.

법원은 국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며 학습의 장이라

할 때, 법원에 온 시민에게 “왜 왔느냐”는 식의 질문으로 괜히 움츠러들게 만들 필요는 없다. 시민이 법정을 참관하는 것은 그 시민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은행에 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변호인이 일어서서 반대신문을 하려 할 때, 재판장이 “앉아서 하십시오”하고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였다. 검사는 보통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변호인만 서서 한다면, 피고인으로서 부지불식간에 변호인이 검사보다 열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다소 비중 있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점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소한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인 어려움과 반인권적인 태도 등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사법의 한 그늘인 것이다.

□ 절차진행과 공판정 운영

(1) 절차적 권리의 고지 여부

피고인에 대해 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잘 준수되고 있었다. 그러나 증인선서시 증인이 선서사항을 구두로 낭독케 하지 않고, 다 읽어보았으면 서명하라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아마 시간절약의 전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나 증인의 입장에서는 그 서면을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거나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증인선서시에는 재판장이 취지를 설명하고, 증인이 구두로 선서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를 정확히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증인의 증언을 두고 ‘거짓말 경연대회장’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선서시에 엄숙한 분위기에서 직접 구두로 선서 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권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재판에서 통역문제

6월 2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단독(424호 법정, 李吉洙 판사)에서 Donald K. Schmidt 등 2인의 미국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속행 95고단270)의 공판이 있었는데, 검사와 변호사, 판사의 증인신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혀 통역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마치 제3자인 양 그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만 영어로 통역되었고, 그들의 최후 진술만 한국어로 통역되었다.

이를 보면서 일제하에 통역재판의 모습이 떠올려졌다. 면 지나친 것일까. 외국인이 관련된 재판에서 정확한 통역으로 한국법정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3) 변호인·검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연기 문제

모니터 기간 동안에 변호인 불출석으로 공판심리가 연기된 것이 여러 건 있었다.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제2형사부 재판장 李康國)에서 변호인 불출석으로, 6월 22일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 법정(합의21부 재판장 徐載憲)에서는 변호사 불출석 2건, 검사불출석 1건, 변호사 불출석으로 오진 사건이 오후로 연기된 것이 2건, 기일 지정을 다음으로 미룬 것이 1건 있었다.

이 중 1건은 변호인의 지방 출장으로 연기되었다고 재판장이 양해를 구한 데 대해 피고인은 가볍게 항변하였고, 재판장이 다음에 다시 나와 달라고 정중하게 말하였다. 재판장의 태도는 친절하고 훌륭하였다. 문제는 공판연기 사실을 재판부는 알고 있는데 피고인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 한번 나올 때 피고인의 심신에 끼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당연한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도 연락하여, 피고인이 쓸데 없는 긴장과 수고를 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별다른 사유를 사전에 재판부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반복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라 징계를 건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사건에 대한 이해도 문제

법정에 제출되는 다양한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노릇이다. 6월 23일 서울형사지방법원 425호 법정(합의22부 재판장 李光烈)에서 방청한 '소위 피라밋 사기사건'의 경우 판·검사 모두 '사기' 집단의 행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재판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을 빚었으며, 여러명의 피고인들의 이름이 비슷한 관계로 혼동을 빚기도 했고, 사건의 이해를 위해 피고인과 증인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재판부가 혼동을 빚자 방청석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에 대해 재판부는 방청인과의 즉석 대

'국민을 위한 사법'이란 법원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을 보고,

국민의 불편과 애로를 줄여가면서,

국민의 권익옹호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

화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한 모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었으나, 전체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재판부의 신뢰가 저하될까 봐 염려된다.

검사의 사건에 대한 소극적 태도도 또하나의 문제이다. 많은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역할을 대행하는 듯한 모습이 종종 보여졌다. 이는 법관의 예단이 작용한 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사의 소극적 자세로 말미암아 법원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탓으로 생각되었다. 검사가 제대로 설명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원리에 충실하게 그대로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검사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을 위한 사법'이란 명제는 법원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을 보고, 국민의 불편과 애로를 줄여가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옹호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내부로부터의 개선노력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부로부터의 감시는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 목표는 사법부가 명실공히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앞으로 우리는 사법부의 일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해 내고, 잘못된 점을 고쳐가도록 촉구할 것이다. 6

[사법감시 25시]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사법감시」는 반론권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사법감시」에 실린 기사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음 「사법감시」호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우조교성희롱사건 항소심판결

—연못속의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맹이를 던져 죽인 소년의 이야기—

7월 25일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재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의 현실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성희롱의 관행을 합리화하고 여성의 인권을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성희롱의 개념을 '성적 괴롭힘'이라고 개념 규정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 운동에 대한 반감, 남녀의 역할과 그 사회적 실태에 대해 왜곡된 신념들을 드러내고 있다. '성적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교육상 또는 직업수행상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적 접촉 또는 친밀감의 표시나 사회 관습상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언동"을 제외하고 "그 행위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하여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을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남녀의 관계를 공동적 화합적 관계로 이해하는,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결 중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괴롭힘은 어떠한가?

"원고는, 피고 신청휴가 1992. 6.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서울대 학교 23동 108호 앞 복도 등에서 원고와 마주칠 때면 의도적으로 원고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해 8.경에는 22동 309호 실험실에서 - - - 원고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원고가 정식 임용된 동년 8.10경 단대에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같은 무렵 23동 4층 교수 연구실에서 원고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뒤에서 당원이 채용하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체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언동이 인정되나 - - -"

항소심 판결 스스로 인정하는 이 정도의 내용도 교육상 또는 직업수행상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적 접촉 또는 친밀감의 표시인가! 아니면 사회관습상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언동인가! 또는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적 화합적 관계에서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여성의 운명이란 말인가! 더 나아가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이 이 정도는 '성적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판결 이유의 모순도 모순이거나와 대한민국의 법관이 이토록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조차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성의 차별과 질곡이 이러한 지경에 당도한 이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겠다.

재판부는 위 판결에서 또한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즉 굴욕적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체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 당하였다거나 정신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여성이 간신히 힘과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그가 입은 피해까지 입증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그런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런 피해는 자절로 오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계속되는 입방식 제의, 육체적 접촉, 신체 감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을 여성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판결을 한 법관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궁금하여 '박용상 부장판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박용상 판사에 대해 확인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대표적인 오판 피해자인 김기웅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그에 대해서

12년을 선고(1993년 9월 28일)하였다. 그러면서도 월간조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럴 수도 있음을 사인하였다. 오판은 있을 수 있으나, 오판을 알았을 때 괴로와하는 1심 재판장과 같은 법관이 있는가 하면, 별로 반성의 빛도 없는 데서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경시대도를 확연히 엿볼 수 있다.

▲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을 잘못 계산하여 선고공판을 열지 못한 채 석방한 사실도 있다(1993년 3월4일 동아일보).

▲ 재판 중에 심리 중인 미결수를 지칭해 “간첩놈”이라는 폭언을 해서 변호인단의 항의를 받았다(1993년 5월27일 경향신문).

▲ 중고교생이었던 자녀 이름으로 경기도 가평에 3~4천평의 임야를 사들였다(1993년 9월9일 조선일보).

▲ 94년 공직자 재산변동 조사결과에서 박판사는 1년에 2억4천9백여 만원의 재산이 증가해 총재산 17억3천8백여만의 재산을 가진 법관으로서 최고 재산증가액을 기록하였다.

▲ 박판사가 부산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일 때에는 현대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려 선고를 한 반면(1992년 4월30일 한겨레신문).

▲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규모인 77억원대 밀수조직 한라판 두목 윤성기씨에 대해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1992년 7월2일 경향신문).

▲ 지난 5공시절 언론자유를 질식시킨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그가 관여하였다(1991년 7월22일 한국일보).

▲ 파리바은행 박현옥씨 해고무효확인 패소판결(1991년 2월1일 세계일보) 등 여러 노동사건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노동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들 사이에 널리 불만을 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련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박용상 부장판사가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법관으로서의 헌법 의식과 공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판결이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힘있는 사람들 편에만 서온 한 판사가 내릴 당연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 사건을 남녀 대립구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볼 때 박 부장판사를 포함한 재판부 법관들이 인간성에 대한 몰이해, 성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편견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법관이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 독립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정하고도 이성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한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항의 집회 개최 등을 민간시민단체 및 여성단체들과 힘을 합쳐 전개해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남성 중심의 전근대적인 인식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서 남녀를 떠나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시대역행적인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동시에 이 판결이 사실상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인 모욕을 주어도 된다'는 성화롱의 사회적 면죄부로서 작용해 우리 사회에 그나마 확보된 평등문화와 인간적 직장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감히 단언컨대, 이 판결은 한 소년이 연못가에서 장난으로 던진 돌에 죄없는 개구리 무리들이 맞아 죽는 결과를 낳은 것에 다름 아니다. 단 하나의 판결에 의하여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후퇴를 경험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판결을 기화로 건전한 양식과 보편적 이성을 가지지 못한 법관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루에 남아 있을 수 없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

이 내용은 지난 1995년 7월 2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여성특별위원회가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표명한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희생양만은 안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사법처리를 보면서—

다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낸다고 불평할 혹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이 우성건설 측 형틀반장직을 맡았던 김 아무개 씨에 대하여 두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두 번 다 기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수사 검사들이 큰 낭패나 당한 듯 발끈하여 영장기각 판사에게 전화에다 대고 원색적인 언사까지 써서 마구 야단쳤다. 그래서 야단맞은 판사는 「사법권 침해」라면서 울근불근 했다고 한다.

조석으로 바뀌고 손질되는 우리네 법과 제도이니까 혹여 검사가 판사의 업무까지 지휘할 수 있는 법이 간밤에 새로 생겼는지 어쨌는지는 모를 일이다. 판사가 하는 일까지 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하는 말이다.

아무튼 그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몫이니 그 사람들끼리 잘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자. 그러나 건설업을 평생 생업으로 삼고 살아온 필자로서는 이 사건을 놓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공사현장에 있어서 형틀반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 인데 그가 과연 얼마만큼의 책임 있는 결정권을 쥐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본다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형틀반장이란 기술적인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나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는 직책이다.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형틀목공분야의 기능공이나 막인부를 동원하고 그 동원된 인부들이 농땡이를 치지 못하도록 감독, 독려하여 작업시키는 일을 할뿐이다. 더 하는 일이 있다면 인부들의 일당을 셈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돈을 타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도 한다. 삼풍백화점 정도의 큰 공사장에서 형틀반장 따위가 감히 자기 책임 하에 기둥의 굵기를 설계보다 가늘게 만들고 더구나 자기 분야도 아닌 철근 가닥까지 빼 먹고, 콘크리트 양을 줄이는 일에 가담하여 책임을 질 만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하겠다. 그가 백화점 주인영감이나 우성건설 사주(社主)의 아들이거나 조카뻘이라도 된다면 또 몰라도

다시 말하여 형틀반장을 전투시에 군대의 위계(位階)에 비유해 본다면 분대장 격도 못되는 자동화기 시수 정도의 직위일 뿐이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장이나 할 수 있는 부대의 작전 지휘권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되겠다고 뽀뽀 우겨댄다면 누가 웃지 않고 배길 재간이 있겠나. 그가 혹여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은 아닌가 부쩍 의심이 든다.

형틀반장은 회사가 부실시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든, 정밀시공을 해서 손해를 보는 간에 아무런 이득도 손해도 없는 직책이다. 그저 속칭 「노가다 십장」으로 불리는 그로서는 인부들과 어울려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때에 따라서는 걸직한 욕지거리도 내뱉어 가며 그렇게 일 한 만큼의 임금을 받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뿐인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형틀 목공분야에 한해서이다. 지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세무 인건비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로 무면허 형틀목공 하도급 업자를 회사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형틀반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모든 범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형틀반장 김 아무개 씨가 '삼풍'공사를 부실시공해서 달성할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조사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가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되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뒷받침해 줄 설득력 있는 충분한 증거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정작 책임져야 될 자들은 성긴 그물에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죄 없는 피라미들만이 희생양으로 만들어졌던 경향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어 왔다.

죄 있는 자가 죄를 받지 않고 죄 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쓰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이는 곧바로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며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다른 삼풍사고의 씨앗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희생양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죄를 모면한 자는 법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것이다. 이러한 사법처리 결과를 구경한 다른 자들도 다들 그 요령대로 부실시공을 하고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요령대로 처리하려 들 것이고 '대형참사'는 또다시 우리를 노릴 것이다.

과거 모든 사건들의 희생양으로 보였던 사람들, 그들의 사법처리 결과를 돌이켜 보기로 하자. 그들은 구속 기소 되었다가도 모두가 금방 석방되고 말았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희생양들이란 이름 그대로 희생양일 뿐이지 원래 죄가 없거나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잡아 가두어 둘 정도의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보면 당연히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가벼운 처벌밖에는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석방될 때쯤이면 이미 사건은 세인들의 망각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고 시끌시끌 입방아를 찧던 사람들도 새삼 사건의 책임에 대해 따지기를 귀찮아하며 누구 하나 이들의 죄상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도 없다.

이러한 희생양을 만드는데 있어서

수사기관이 한통속이 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희생양이야말로 봐 주고 싶은 자와 빠져나가려는 자의 어느 쪽에도 이쁜 인물이다.

그가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모든 것을 수사 지침대로 순순히 자백(진위는 불분하고)해 주어 수사기관의 비위를 한껏 맞추어 주었으니 「불러뺑」(검찰에서 머운 수감자를 골탕먹이기 위해 소환하여 조사도 별로 안하면서 하루 종일 검찰청 건물 안에 있는 반평도 안되는 토끼장 같이 좁은 감방에 넣어 두었다가 저녁에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내어 수감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인권유린 행위)도 없을 것이다. 그의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도 사용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뒤를 봐주고 있으니 충분한 자금지원이 되어 수감자가 누릴 수 있는 최대 특전인 「용털」이나 「범털」이라는 수감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칭호를 받으면서 몇 개월간만 잘 지내다가 석방되어 나오면 회사나 사용자 측에 의해 영웅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희생양이란 당사자는 물론이고 필요로 하는 자나 만드는 자나 모두를 만족시켜 준다.

이번 삼풍참사의 사법처리만은 이따위 희생양 잔치를 벌여서는 절대

로 안되겠다. 그런데 시공회사의 말단직원에 불과한 인물이고 법원에서도 구속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두번씩이나 기각한 형들만 한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어이 받아 내어 보려고 검찰이 그렇게 염치 불구하고 열을 올릴 필요성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가 구속되지 않으면 모든 수사체계에 구멍이라도 난단 말인가. 아니면 그가 삼풍사건의 모든 증거를 인멸해 버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문건이라도 숨기고 있던 말인가. 그게 아닌데도 그를 꼭 처벌하고 싶다면 불구속으로 기소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법'을 직업으로 하고 사는 검사들이 이번 '삼풍참사'에 있어서 피라미 급으로 보이는 시공회사의 형틀반장 한 사람의 구속영장을 받아 내기 위하여 '법'을 무시하고 체면도 염치도 덮어 버리고 영장담당 판사에게 불학무식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혹여 이것이 희생양 만들기 작업은 아닌지 묻고 싶다.

필자의 이런 의심이 불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재된 피해의식 때문일 뿐이기를 간절히 빌 따름이다. 66

[유명중]

사법감시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발언대’, ‘이것만은 고치자’란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글을 실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200자 원고지 10매 전후 분량이면 됩니다.

법관의 편의주의와 권위주의

몇 주전 남부지원 민사 단독법정에서 이 변호사가 목격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당사자가 직접 나왔고 피고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였다. 소송의 대상이 된 분쟁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첨예하게 이해와 감정이 대립되고 있어 가필코 해결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판사가 보기에는 소송의 대상으로 반드시 적합한가에 의심이 들었는데다, 기재된 청구취지 등도 법률의 요건에 제대로 맞지 않아 짜증이 날 판이었다. 판사는 즉시 원고에게 재판의 대상으로는 적합치 않은 듯하니 다른 방법으로 잘 해결하도록 하고 소는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거듭 내세우자 판사는 친절하게, 때로는 근엄하게, 또는 단호한 어조로 장장 20분 가까이 설득하여 결국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자 난데없이 피고 대리인이 소취하에 동의할 못하겠다고 나섰다(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변론을 한 이후로는 동의가 있어야만 소취하가 가능하다). 피고 변호사는 원고가 후일 다시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판결로써 종결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사건을 쉽게 한건 때려던 판사는 변호사에게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성공보수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법원의 형사 단독 법정에서 발생한 법정구속 사건은 이미 보도가 되어 잘 알려져 있다. 해고 근로자들 4명이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다 업무방해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첫번째 공판기일(7월 21일)에 피고인 4명이 모두 출석하였고 두번째 공판(8월 25일)에서 피고인 2명만 출석하고 2명은 결석하였다. 이유를 묻는 판사에게 출석한 2명은 나머지 2명의 개인사정을 변명하였다. 기소된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태도가 사뭇 투쟁적이라고 느낀 판사는 재판을 피고인들 편의대로 진행하는 것이냐고 힐난하였고, 그에 대하여 출석한 피고인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그리고 출석한 피고인 2명은 즉시 법정구속이 되고 재판은 다음 기일로 속행되었다.

전자는 다소 회극적인데 반하여 후자는 심각하다. 두 가지의 예가 모두 당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전후의 복잡한 사정들이 생략되어 있고 전해진 이야기들이라, 소송 당사자나 법원 쌍방에 반론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정도로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단순화한 두 사례는 우리 법원의 소송 진행상 편의주의와 권위주의의 전형으로 보아 크게 무리가 아니므로 이야기를 전시킬 수 있다.

두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절차상 판사의 편견에 기한 일방적 진행으로 크게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는 반면, 법원을 비롯한 법조 안팎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들 다수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적어도 위법하지는 않은 일로 생각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치국가의 시민과 법원 사이에 일어나는 중대한 시각 차이요 의사불소통의 현상이다.

민·형사를 불문코 소송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시키고 동시에 심리를 적절히 행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소송지휘권이 다. 민사법정에서 법관은 불명료한 소송자료를 보충하고 정리하기 위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장 간편한 방법에 의한 분쟁의 종결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명백히 반대의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외의 종결을 고집하고 강권하는 것은 재판권을 침해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소취하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와 화해기일에 있어서도 유사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신이 있으면 각하나 기각의 재판을 하면 될 것이다. 형사법정에서의 법정구속은 고유와 의미의 소송지휘권이나 법정경찰권의 행사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의 구속일 뿐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일반적인 요건을 엄격히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법원을 무시하는 언동을 보였다는 주관적 판단으로부터 도주의 우려 등 구속요건을 추단하여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경우 필요하다면 법원조직법상 법정경찰관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와 아울러 형사법정에서 법관의 반말, 신경질적인 어투, 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진행은 피고인의 법정무시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명심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던 편의주의·권위주의적 법관의 태도는 시민들이 법치주의적 감수성을 갖추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 서두에 든 한 편의 회극과 한 편의 비극은 고쳐야 할 그 첫번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다. 6

[처벌직 변호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업일지 ◆

1994년

- 9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한국공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공동주최 전국 변호사, 공법학자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9월 8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발표
- 9월 10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발족
- 9월 12일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 9월 28일 「만나고 싶습니다. 1」 - 변정수 前헌법재판관과의 간담회
- 10월 27일 제1회 「열린법정」 -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
- 11월 11일 제1회 「사법감시토론회」 -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 11월 18일 제2회 「사법감시토론회」 -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1995년

- 1월 20일 「만나고 싶습니다. 2」 - 김창국 변호사와의 간담회 ('이탈리아의 깨끗한 손 운동과 사법부의 역할')
- 2월 13일 제3회 「사법감시토론회」 -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 '법원방청인 100인이 본 변호사 보수' 설문조사
- 2월 26일~3월 28일 「사법개혁」 기획기사 10회 조선일보 게재
- 5월 15일 「법원사」 다시읽기 - 법원행정처 편찬 '법원사' 서평회
- 5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대검찰청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 6월 8일 「사법 1백년의 반성과 사법개혁의 과제」 공청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주최)
- 6월 12일 제2회 「열린법정」 - 박경자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
- 6월 13일 대검찰청 김성호 중수2과장과 담당 재판부에 前 李노동부장관에게 증리한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약식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통상회부할 것을 건의하는 서한 발송
- 6월 29일 제3회 「열린법정」 -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해인원 정광용씨 사건
- 7월 24일 「5.18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박한다」 토론회 - 5.18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
- 7월 27일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판결을 보는 우리의 입장' 발표
- 9월 4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LG그룹 해고자들을 범정부속조치한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한주 판사에게 서한 발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만이 개혁의 유일한 힘입니다.

소식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개혁의 영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 입니다. 개혁의 요체는 결국 민이 주체라는 관점에서 시민 참여의 분화를 사회전반에 확산 시키는 것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형식적인 몇가지 조치가 취해진긴 했지만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동력으로 국가의 전영역에 비판과 감시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법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으로 유야무야된 사법개혁을 보면서 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만이 개혁의 유일한 힘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 참여연대의 소식지 발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시민 대다수가 법조인의 절대 부족, 비싼 수임료, 불합리하고 권위적인 사법제도 등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던 현실을 목도하면서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에 있어 지속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는데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사법감시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굴절된 헌정사에서 사법 역시 파행을 거듭함으로써 사법의 제자리매김과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동안의 반성에서 연유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요청이 어느덧 국민으로부터의 독립까지도 요구하는 기묘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치권력이나 사회 제력으로부터의 온전한 독립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법의 모습이며 진정한 사법민주화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될 사법을 국민의 사법이라는 제자리로 온전히 되돌려 놓는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통제, 사법감시가 필수적입니다.

법정에서 단지 숨죽인 방청인일 수 밖에 없는 국민, 부당한 제도와 관행, 심지어 판결에 대해서도 체념해 버릴 수 밖에 없는 당사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사법감시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법의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사법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는데 이 소식지가 큰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원

성역으로 되어 온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에 감사한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사법감시센터가 소식지를 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동 센터는 그동안 여러 가지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성역처럼 되어온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만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

사한다.

우리 사법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우리 연구회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여러 문제점과 함께 사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재판과정의 주체적인 시민참여만이 아니라, 5.18학살에 대한 검찰의 기만적인 태도와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에 의한 기소나 특별검사제같은 것도 시민적 사법참여로써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학계나 법조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동 센터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고 입법안을 함께 마련하며 시민운동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원한다.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까지 법원의 재판은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습니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구인 법원이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재판을 지향하는 사법감시운동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일입니다. 사법감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법원의 올바른 재판, 국민을 위한 재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인권운동사행방

건강한 사법부는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인권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를 제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사법감시센터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사법감시」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사법감시」호가 남녀차별적 법령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여성인권회복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법은 늘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주눅들게 한다. 약자가 법에 기대고자 할 때 법앞에 약자의 설 곳은 왜 그리 부족하기만 한지.....

사법개혁은 바로 사법감시활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귀한 역할을 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가을 하늘에 띄워보낸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연대 ”

-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 참여경제를 열어가는
시민운동입니다.
-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권운동입니다.
- 국민을 민주주의의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 바꾸는
국민주권운동입니다.
-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운동입니다.
- 법을 사회정의와 인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법률운동입니다.
-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참여운동입니다.
- 21세기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평화운동입니다.
- 21세기 새로운 한국사회를 예비하는
사회개혁운동입니다.

「사법감시」의 구독을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하이텔/천리안 : PSPD
(전화 : 796-8364)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 문혜진

국민은행 015-21-0808-184

제일은행 325-20-123107

상업은행 192-08-324269

농협 094-02-092853

• 후원금 1구좌 : 5만원

• 「사법감시」 정기구독료 : 연 2만원